



제422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특수학교 언어재활사 배치 등 〉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76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경숙 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20.
3. 회부연월일 : 2024. 1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학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장애를 가진 학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활한 의사소통은 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 학생들이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 언어재활사를 두도록 하여 특수학교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둘 이상의 인근 특수학교를 순회하는 순회언어재활사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59조의2(언어재활사의 배치) ①</u> <u>특수학교에 「장애인복지법」</u> <u>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u> <u>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u> <u>관에 둘 이상의 인근 특수학교</u> <u>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언어재</u> <u>활교육을 담당할 순회언어재활</u> <u>사를 둔다.</u> <u>② 제1항의 언어재활사의 배치</u> <u>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u> <u>령령으로 정한다.</u>

언어재활사란 두뇌 기능 장애로 인한 언어장애, 발음에 문제를 보이는 조음음운장애, 목소리를 정상적으로 산출하지 못하는 음성장애, 말더듬과 같은 유창성장애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들의 중재와 진단, 재활 및 훈련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말함.

「장애인복지법」 제71조¹⁾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교정사 등을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양성·훈련하기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72조의²⁾에 따라 언어재활사가 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장애를 가진 학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활한 의사소통은 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바, 개정안은 특수학교 학생들의 의사소통 재활 등을 돕기 위해 언어재활사 또는 순회언어재활사를 두도록 하려는 취지임.

1) 「장애인복지법」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點譯)·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언어재활사”라 한다)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언어재활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언어재활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④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와 언어재활사로서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함)」 제 15조³⁾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을 나열하고 있는데 의사소통장애 역시 하나의 유형에 해당함.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소통장애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는 2024년 4월 기준 2,600명으로 조사되어 전체 11만 5,610 명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약 2.25%에 해당하는바, 그 수가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청각장애(2,841명), 지적장애(57,883명), 지체장애(9,263명), 자폐성장애(22,194명), 발달지체장애(14,301명) 등 다른 유형의 장애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정안의 언어재활사 배치를 통한 지원의 경우 다양한 장애영역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치료·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

<기준: '24.4.1., 단위: 명, 교, 급>

구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일제 통합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수	30,027	65,966	19,254	363	115,610
시각장애	1,025	213	459	1	1,698
청각장애	535	666	1,630	11	2,842
지적장애	14,777	37,299	5,798	9	57,883
지체장애	3,784	3,097	2,308	74	9,263
정서행동장애	73	1,154	558	-	1,785
자폐성장애	8,742	11,876	1,574	2	22,194
의사소통장애	201	1,405	994	-	2,600
학습장애	6	632	427	-	1,065
건강장애	12	100	1,867	-	1,979
발달지체	872	9,524	3,639	266	14,301
계	30,027	65,966	19,254	363	115,610

자료: 교육부

다만, 개정안 심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언어재활사의 배치가 특수교육대상자 전반에 대한 일반적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학생에 따라 필요로 하는 치료지원이 상이하여 여전히 형평성 문제로 인해 제도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행 「특수교육법」 제28조⁴⁾ 및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언어재활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등 필요한 의사소통 장애 치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 법 제28조제2항은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⁵⁾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감과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임.

셋째, 언어재활사 배치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① 특수학교 1개교당 언어재활사 1명을 배치하거나(시나리오1) ② 순회언어재활사를 시·도별 특수학교 3개교당 1명 배치하는 상황(시나리오2)을 가정하여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시나리오1의 경우 5년간 296억 1,000만원(연평균 59억

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 ⑨ (생략)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 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교육감 또는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할 수 있다.

2,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시나리오2의 경우 5년간 105억 2,400만원 (연평균 21억 4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2026~2030년) >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언어재활사의 배치 (안 제59조의2)	시나리오1	5,491	5,698	5,913	6,136	6,372	29,610	5,922
	시나리오2	1,952	2,025	2,102	2,181	2,265	10,524	2,105

주: 1) (시나리오1) 국·공·사립 특수학교에 기배치되어 있는 언어재활사 인원수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1개교당 1명 이상 언어재활사를 배치할 수 있는 교육청을 제외한 시도교육청에 인력 166명이 신규채용되는 것으로 가정

2) (시나리오2) 시나리오1에 따라 도출된 필요 인원수를 3개교당 1명의 순회언어재활사로 배치하는 것으로 하여 총 59명이 신규 채용되는 것으로 가정

3) 언어재활사는 교육공무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2026년에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기존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넷째, 특수학교 언어재활사 배치 및 순회언어재활사 배치에 관한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배치하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특수학교를 순회”하는 순회언어재활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환경 제공” 및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실시” 등의 목적⁶⁾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배치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특수교육법」 제25조(순회교육 등)는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 제공을 위해 교육감이 각급학교의 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언어재활사 배치에 관한 사항 역시 해당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짐.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어치료 등 치료지원 제공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시행('08.5.26.)에 따라 학교 외부(공공보건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전문인력이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이고⁷⁾,

언어재활사를 학교 등에 배치하여 치료지원을 할 경우 물리치료, 청능훈련 등 타 영역의 치료지원 제공 방법과 차이가 있어 다양한 치료지원 전문인력 간 배치 형태의 형평성 문제 발생 등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특수학교 등에 배치되는 인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특수교육법」의 체계를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7) 현행 「특수교육법」 시행 이전에는 「특수교육진흥법」('08.5.26. 폐지) 제19조에 따라 특수학교(급) 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치료교육 담당교원이 교육과정 내에서 언어치료 등 치료교육 실시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시도교육청 의견

- (인천, 충북, 충남, 전북) 과거 특수교육진흥법('08. 5. 26. 폐지)에 따라 특수학교 등에 치료특수교육교사가 배치되어 언어치료, 물리치료 등을 담당하였으나, 전문성 부족 등의 실효성 문제로 해당 제도는 현재의 치료지원체제로 변경되었음. 언어재활사 학교 배치는 추후 다른 영역의 치료지원 전문인력 학교 배치 요구 및 현행법의 제정 취지 훼손 등 교육 현장의 강력한 반발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부산, 강원) 언어치료 등 치료지원을 교육과정 내에 포함하여 운영할 근거가 없음. 학교 내 언어재활교육을 실시할 경우, 정규 교과수업 시간 침해 문제 발생 우려가 있음.
- (대구, 광주) 2022 특수교육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상생활 활동을 별도로 편성하여 의사소통 강조하고 있음. 따라서, 의사소통능력 함양은 교육과정 안에서 특수교사가 담당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86